

2018.07.09

APTA 2차 개정 발효 및 중국 수입관세율 인하 안내

1. 「APTA 2차 개정」 발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은 1976년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 등 6개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2017년 1월 제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 각 회원국들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2018년 7월 1일부터 APTA의 개정내용이 발효되어 중국, 인도 등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 개정 이전보다 폭넓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양허대상품목 및 양허세율 확대

- 우리나라는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이전과 비교해 약 28% 증가한 2,79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에서 약 33% 인하된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 품목의 경우, 한-중 FTA 또는 한-인도 CEPA의 협정세율보다 APTA 협정세율 적용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관세인하 혜택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양허품목 수 (특혜품목 수 비중)		MOP(%) (MFN 대비 관세인하율)		
	제3라운드	제4라운드	제3라운드	제4라운드	
한국	1,367	2,797 (28%)	35.7	33.4	
중국	1,697	2,191 (29%)	26.7	33.1	
인도	570	3,142 (29%)	25.5	33.4	
개 도 국	방글라데시	209	598 (10%)	14.0	21.8
	스리랑카	427	585 (17%)	16.0	22.6
	라오스	-	999 (8.9%)	-	-
총계	4,270	10,312	23.6	28.5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8.07.09

(2)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

- 제3라운드까지 AP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일하게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개정에서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등 HS 4단위 156개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품목의 원산지 판정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2.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

- APTA 회원국인 중국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APTA 2차 개정 내용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했습니다.
- APTA와는 별개로 「일반 소비자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최혜국세율을 자체를 인하하여 특정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APTA 2차 개정 내용

- 중국의 수입자는 금번 2차 개정으로 AP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존 1,69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서 29%증가한 2,191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대비 평균 33.1%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일반 소비자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의 내용

- 수입관세율 조정대상 상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의류, 약품, 전기전자 제품과 잡화 등 일용 소비자품(HS CODE 8단위 기준 1,449개 품목)으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8.07.09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금번 조정에는 최혜국세율 자체를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합니다.

(3) 인하 관세율 활용방안

-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수입관세율 조정으로 한-중 FTA 발효 4년 차 세율보다 최혜국세율이나 APTA 세율이 낮아지는 품목이 생겼습니다.
- 따라서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한국 수출자와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중국의 수입자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APTA 세율 및 FTA 실행세율을 모두 고려하여 수입자가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